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12

발의연월일: 2020. 10. 22.

발 의 자:서영교・김승원・황운하

장경태 · 임호선 · 이규민

안민석 · 오영환 · 김민철

신정훈 · 이수진 · 이병훈

이해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 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2년간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매해 200건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적인 처벌 규정만으로는 관련 범죄의 예방 및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대원은 소방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소방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방해행위의 제지 등) 소방대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의2(방해행위의 제지 등)
	소방대원은 제16조제1항에 따
	른 소방활동 또는 제16조의3제
	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
	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
	지할 수 있다.